

제2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2020.11.24.)

일반의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해 용]

목 차

1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	------------------------	---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1.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1. 20.

2. 요구이유

-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현황
 - 1) 시설명 :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 2) 위치 : 경남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
(월성청소년수련원 내)

3) 시설개요

구분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개원일	2001. 5. 20.		2014. 3. 22.		2014. 6. 20.
규모 면적	지하1층, 지상3층 / 1,500.44㎡		지상2층 / 774.38㎡		캐빈하우스 4동, 방갈로 3동, 데크 14동 282.74㎡
근무인원	9명		4명		1명
주요 시설	지하	식당,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캐빈하우스(복층) 4동 방갈로(단층) 3동, 야영데크 14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1층	사무실, 강의실(2곳), 숙소(10실), 준비실, 원장실	1층	우주체험관, 4D영상관	
	2층	강당, 강의실, 숙소(8실)	2층	우주창의관, 교육체험실	
	3층	지도자숙소(5실)	옥상	천체관측관	

나.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일까지(3년간)

다. 위탁사무 및 조건

○ 거창월성청소년수련원

- 월성청소년수련원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위탁대상 시설의 개·보수비는 거창군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 지원
- 운영비는 위·수탁자 협의로 예산범위 내 지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3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2항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위탁대상 시설 및 물품 무상사용
- 위탁금을 지급하고 관람료 등 수익금은 거창군 세입 처리

○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 수입
- 캠핑장 사용료는 연11,000천원 거창군에 납부
- ※ 입찰가격 및 협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수탁자격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시설명	구 분	지원자격
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과학관	청소년이용시설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 실적 필요
캠핑장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실적 필요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공고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공개모집 시 지원단체 없으면 위원회 심의 후 현 수탁기관 재연장

4. 관계법령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 라.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향후계획

- 가. 2020. 11월 : 공개모집 공고
- 나. 2020. 12월 : 제253회 정례회 의안 상정
- 다. 2020. 12월 : 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위원선정 : 관련공무원, 군의원, 교사,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9명 이내)
- 라. 2020. 12월 : 수탁자 선정 발표
- 마. 2020. 12월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6. 검토의견

- 가. 청소년활동시설(거창월성청소년수련원,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 캠핑장)은 초·중·고교와 안전한 네트워크 형성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 나. 그 결과 매년 이용인원의 증가와 수입액 증가 등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양해 오고 있으나 2020년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등교중단 및 단체활동 자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의 업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시설활용을 위해 위탁운영이 타당함
- 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탁기관 모집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령 및 기타 제반사항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